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5. 12. .

법제처 심사 전

법무부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 11명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 5명, 검사 6명)을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2. . ~ 12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법무부령 제 호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 중 “4명”을 “9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연구위원) 연구위원 <u>4</u> <u>명</u>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 되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	제10조의2(연구위원) ----- <u>9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6]

법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(제33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총계	<u>134</u>	<u>145</u>	+11
일반직 계	<u>115</u>	<u>120</u>	+5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검사	<u>5</u>	<u>10</u>	+5
·	·	·	
·	·	·	
검사 계	<u>19</u>	<u>25</u>	+6
검사	<u>8</u>	<u>14</u>	+6
·	·	·	